



#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위험요인 신고제도 다빈도 Q&A



#### 01

## 위험요인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?

Α1

-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 품목(제품)을 구입한 수급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- 단, 수급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, 급여계약을 체결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## Q2

#### 위험요인 신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시범대상 품목(제품)을 사용 하던 중 신체 부상 등 다친 경우, 부상 발생 장소, 부상 부위, 부상의 정도, 부상 발생 원인 등 구체적인 부상 관련 내용

### **A2**

- ② 다치지는 않았으나 다칠 위험이 높은 경우, 발생 가능한 위험 내용, 예측 부상 부위, 정도 등 예견 가능한 위험 내용
- 신고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- 제품 관련 일반 상담, 피해 보상 관련 내용은 위험요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## Q3

## 위험요인 신고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(제품)을 구입했으면 시범사업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한가요?

**A**3

- 아닙니다. 각 차수의 시범사업 대상 품목(제품)에 대한 신고는 각 차수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.
- (예시) 2차 시범사업 대상 품목(제품)에 대한 위험요인 신고 → 2차 시범사업 기간 '24. 9월 ~ '25. 8월 동안만 가능

#### **Q4**

#### 위험요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Α4

- 위험요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, 홈페이지 VOC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- (우편주소) (26464)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(반곡동, 국민건강보험공단) 23층 요양자원실 복지용구4팀(우편번호: 26464)
  - (팩스번호) 033-749-6378
-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자(SMS)로 접수 통보가 안내됩니다.

# Q5

##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경우,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되나요?

- 시범사업 대상 품목(제품) 구입 수급자가 해당 품목(제품)을 사용 중 다쳤거나 다칠 위험이 있었음을 복지용구사업소에 말할 경우
  - 위험요인 신고제도를 설명하고 공단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
  - ②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신고를 대신해 주길 원할 경우,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신고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

**A5** 

- 수급자가 위험요인 신고서를 복지용구사업소에 제출한 경우
  - ▶ 공단(요양자원실 복지용구부)으로 이관 처리
- 수급자들에게 동일한 민원(사용 중 다칠 위험 요소) 등이 다수 확인 되고 복지용구사업소에서도 해당 위험요인의 신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▶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신고서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

Q6	위험요인 신고서 외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?
<b>A6</b>	<ul> <li>위험요인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</li> <li>수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용,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보호자용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</li> </ul>
Q7	위험요인 신고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A7	○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※ 알림·자료실 > 복지용구 안내 > 복지용구 공지사항 > "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위험요인 신고제도 안내"
Q8	위험요인을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 되나요?
Q8 A8	위험요인을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 되나요?         ○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.         신고       ▶ 접수 통보       ▶ 내용 확인       ▶ 전문가 검토       ▶ 필요조치
	○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.  지고 및 점수 및 대용 및 전문가 및 필요조치
A8	<ul> <li>○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.</li> <li>신고 ▶ 접수 ▼ 접수 통보 ▶ 내용 확인 ▶ 전문가 검토</li> </ul>

Q11

복지용구사업소에서 위험요인 신고를 대신 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할 일이 있나요?

**A11** 

○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복지용구사업소에 신고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제품 관련 수리 내역, 수급자 응대 이력, 위험요인 인지 경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